



시 보

시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.

www.namwon.go.kr

제41호 2024. 7. 25.(목)

선 람	기관의 장

공 고

○ 남원시 공고 제2024-1436호 남원시 보건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----- 1

회 람	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행 : 남원시 / 편집 : 홍보전산과 ☎(063)620-6034

남원시 공고 제2024-1436호

「남원시 보건소 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7월 23일

남 원 시 장

「남원시 보건소 운영에 관한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「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」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제증명 발급 수수료 징수기준을 규정하고 인용조문을 현행화하여 법 적합성 제고에 이바지 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제증명 발급 수수료 징수기준 (안 별표)

3. 입법예고기간 : 2024. 7. 23. ~ 2024. 8. 12.(20일간)

4. 의견제출

가.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·개인은 2024년

8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원시장(참조 : 남원시 보건소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의견 제출사항

- (1)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)
- (2) 의견 제출자의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
다. 의견 제출할 곳 : (우) 55738 / 남원시 요천로 1285, 남원시보건소

라. 의견 제출 방법 : 직접방문, 전자메일(jhpark2020@korea.kr) 등

5. 기타사항

자세한 사항은 남원시보건소(☎063-620-7913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6. 붙임 : 「남원시 보건소 운영에 관한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 1부. 끝.

남원시 보건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: 2024. 7. .
제 출 자: 남 원 시 장
제안설명자: 보 건 소 장

1. 개정이유

「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」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제증명 발급 수수료 징수기준을 규정하고 인용조문을 현행화하여 법 적합성 제고에 이바지 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제증명 발급 수수료 징수기준 (안 별표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」

나. 그 밖의 사항

1) 입법예고

- 기 간: 2024. 7. . ~ 2024. 8. . (20일간)

- 결 과:

2) 비용추계서: 비추계대상

3) 규제예비심사:

4) 성별영향평가:

5) 부패영향평가:

남원시 조례 제 호

남원시 보건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남원시 보건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를 별지와 같이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

제증명 발급 수수료 징수기준 (제6조 관련)

구 분	기 준	수수료	비 고
1. 건강진단서	1통	500원	
2. 근로자 건강진단서	1통	500원	
3. 채용 신체검사서	1통	500원	
4. 일반진단서	1통	500원	
5. 특별진단서	1통	2,000원	요양신청용, 병사용, 상해진단용
6. 사체검안서	1통	5,000원	
7. 성별 및 연령감정서	1통	2,000원	
8. 건강진단결과서	1통	3,000원	「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」 제2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말함
9. 사망진단서	1통	500원	
10. 출생,사산 또는 사태 증명서	1통	500원	
11. 기 발급증명서 추가 발급	1통	300원	
12. 제증명 1통 초과 추가발급	1통	100원	당일 발급 시에 한함.
13. 운전면허적성검사	1통	500원	

남원시 보건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비용추계서

○ 비용추계 대상 여부

- 조례 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없어 「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.

※ 「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4항제1호

제3조(작성대상)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.

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,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과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.

③ 「지방자치법」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.

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. 단,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
2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3.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

붙임	관련 법령
-----------	--------------

■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

제5조(수수료) 보건소에서 제2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보건소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. <개정 2018. 3. 28., 2023. 11. 22.>

[시행일: 2024. 11. 23.] 제5조

의견제출서

1. 의견제출
자치법규 명

2. 제출자	성명(명칭)
	주 소

3. 의 견

4. 기 타

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(의견제출 및 처리)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

2024년 월 일

의견서 제출인 주 소 :
 성 명 : (서명 또는 인)
 전 화 :

남원시장 귀하

비 고

1.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.
2.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.
3.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